

#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050호 | 2015년 8월 12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임성호 | www.nars.go.kr

## 업무용 차량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과제

권 순 조 \*

#### 1. 들어가며

최근 법인 등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고가 의 수입차를 구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조세탈루가 증가하고 있음이 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게 되면, 구입 및 리스비용과 유류비 등 제반 유지비용까지 모두 세법상 손금산입(損金算入)이가능함을 악용해 업무용으로 고가 수입차량을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수입자동차협회(2015)의 통계를 분석해보면,1) 우리나라 1억 원 이상의 고가수입차 판매량은 최근 5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4년에는 1억 원 이상 수입차총 판매량 14,976대 중 12,458대(약 83%)가 업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기초해볼 때,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이 고가 수입차량 구매를 부추기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2)을 마련했으며, 국회에서도 다수의 입법안13이 발의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제도

2) 기획재정부, 「2015 세법개정안」, 2015.8.6.

를 개관하고 주요쟁점, 해외사례 및 향후 조 세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현행 업무용 차량 과세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차량 구입 시에는 감가상각비, 리스 시에는 리스비용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 방식으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업무용 차량의 구입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14호에 의해서, 리스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7호다목에 의해서 과세소득에서 비용공제가 가능하다.4)소득세 세제혜택의 예시는 <표 1>에서확인할 수 있다.

법인의 업무용 차량 비용에 관한 세제혜택은 손금산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법인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이어야 한다. 업무용 차량의 구입 시에는 「법인

<sup>1)</sup>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 료(2015.6.)를 참고

<sup>3) 「</sup>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5984, 이상일의원 등 17인, 2015.7.7.) 외 다수

<sup>4) 「</sup>소득세법」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sup>7.</sup>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sup>14.</sup>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표 1> (예시)개인사업자의 리스차량 이용 시 절세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율			납부세금		
	소득세	주민세	계	리스미사용(A) (과세금액 2억원)	리스사용(B) (과세금액 1.8억원)	(A)-(B)
~ 15,000만원	6~35%	0.6~3.5%	6.6~38.5%	4,136만원	4,136만원	-
15,000만원 ~	38%///	3.8%	41.8%	2,090만원	1,254만원	836만원
합 계				6,226만원	5,390만원	836만원

주: 과세표준 소득 신고액이 2억 원인 개인시업자가 연간 리스료 2,000만 원 납부 시 절세금액을 산출(리스비용만 고려함) 자료: 「소득세법」을 참고해 저자 직접 산출

<표 2> (예시)법인사업자의 리스차량 이용 시 절세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율			납부세금					
	법인세	주민세	계	리스미사용(A) (과세금액 300억원)	리스사용(B) (과세금액 299.8억원)	(A)-(B)			
~ 200억원	10~20%	1~2%	20~22%	43억 7,800만원	43억 7,800만원	-			
200억원 ~	22%	//2.2%//	24.2%	24억 2,000만원	24억 1,516만원	484만원			
합 계				67억 9,800만원	67억 9,316만원	484만원			

주: 과세표준 소득 신고액이 300억 원인 법인시업자가 연간 라스료 2,000만 원 납부 시 절세금액을 신출(라스비용만 고려함) 자료: 「법인세법」을 참고해 저자 직접 산출

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리스 시 리스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6호의 자산의 임차료에 해당되어 손금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고 있다.5) 법인세 세제혜택의 예시는 <표 2>에서확인할 수 있다.

### 3. 주요 쟁점

첫째, 업무용 차량의 업무관련 범위와 관련한 쟁점이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법」제27조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한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된 경위, 자산의 용도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6)차량은 사적인 용도로 전용이 쉽게 일어날

- 5)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 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 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6. 자산의 임차료
- 6) 대법93누10675, 1993.12.28.【판결요지】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재산인지의 여부
  는 정관에 정하여진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결정...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업무용 차량이 전부 업무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전부 사적용무를 위해 사용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것은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필요경비나 손금산입 범위와 관련한 쟁점이다. 현행법상 업무용 차량은 차량가격이나 유지비용과 상관없이 무제한적으로 필요경비 처리나 손금산입을 인정해준다. 이로인해 사업자에게 필요이상의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높은 유지비용을 쓸 유인을 제공할수 있는바, 이는 고가 수입차 구매비중이 개인보다 업무용에서 더 크다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7) 나아가 업무용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업무적으로무용함에도 사적인 필요8)에 의해 고가의 수입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할 유인도 제공할수 있다.9) 이는 조세의 탈루나 기업 자원의

<sup>7)</sup> 실제 일부 수입차 업체는 광고 등 마케팅 수단으로 이러한 업무용 차량의 세제혜택을 부각시켜 고가차량을 구매 또는 리스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sup>8)</sup> 예를 들어, 경영진의 가족, 친지 등의 필요 등

<sup>9) 2011</sup>년 담철곤 오리온그룹 화장 부부가 람보르기니, 포르쉐, 벤츠 등을 법인명의 업무용 차량으로 리스한

낭비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과세형평성과 관련한 쟁점이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차량구매 및 리스비용과 관련 제반 유지비 등을 모두 부담하는 반면, 사업자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한 후 개인용도로 차량을 이용해도 명확한 확인절차 없이 100% 필요경비나 손금산입 혜택을 받고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담세력(擔稅力)에 비례해 공평하게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과세형평성 등 조세정의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 4. 해외사례 및 입법논의 현황<sup>10)</sup>

#### (1) 해외사례

우선,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업무용 차량의 업무관련 범위 판단기준이우리나라에 비해 구체적인 편이다. 영국은고용의무 수행, 일시적 근무지 출근에 사용할 경우에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일본은통근, 기타 사업상 관련 운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만 반드시 사용자의 신분은법인의 임직원이어야 한다. 독일은 유한회사의 회사명의 차량은 100%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며, 인적회사는 업무용 차량이 업무에 50% 이상 사용될 경우, 필수적 업무용 자산으로 분류하고 전액 손금 인정한다.

다음으로, 업무용 차량 구입비용과 관련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업무용 차량의 구매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제한하 는 제도가 없으며, 영국은 차량가격이 아닌 CO<sub>2</sub>배출량에 따른 손금제한 규정이 있다.<sup>11)</sup>

뒤, 자녀 통학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법인차량을 제공받은 자의 세무처리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업무무관 사용분을 일부 인정하는 방식을 운영하지 않지만,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업무무관 사용 비율등을 산정해 업무무관 사용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 입법논의 현황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계속심사 중인 관련 법률안으로는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를 제외하고 법인이 구입·리스·렌트한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3,000만 원 한도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sup>12)</sup>과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일정가액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법인차량 운행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 경우 그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 손금 산입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sup>13)</sup> 등이 있다.

#### 5. 향후 조세정책 과제

## (1) 「2015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2015 세법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업 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를 위한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임직 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 우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로 인정하고,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

<sup>10)</sup>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법인차량 의 사적사용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연구』, 2013.9.을 참조해 정리

<sup>11)</sup> 참고로 영국은 CO<sub>2</sub>배출량이 130g/km를 초 과하는 리스차량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리스비용 의 15%를 손금불산입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은 모든 차량에 대해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를 규정하고 매년 고시하고 있으며 승용자동차 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손금산입을 배 제함으로써 감가상각 한도를 엄격히 적용한다.

<sup>12)</sup> 의안번호 1915966(김동철의원 등 14인, 2015.7.6.)

<sup>13)</sup> 의안번호 1915984(이상일의원 등 17인, 2015.7.7.)

용 인정하는 제도 도입 등을 예정하고 있다.

#### (2) 향후 조세정책 과제

「2015 세법개정안」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정당한 과세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책으로서 충분히 의의가 있다. 다만,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의 가입여부가 임직원이 아닌 자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14) 기업로고 부착제도가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자가 필요이상의 고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은 아니라는 점 등에서추가적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선, 업무용 차량에 대한 업무무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의 성격으로 간주해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업무무관 사용에 대한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업무무관 사용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은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이 존재하며, 미국도 업무와무관한 사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를 적시하고 있어 차량 사용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세정당국은향후 업무용 차량의 업무와 무관한 사용범위에 관한 세부지침과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5)

그리고 업무용 차량을 신고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벌칙규정의 마련이 필요 하다. 업무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신고 와 관련 세금납부가 전제된 사적이용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허위신고를 통한 사적이용 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것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법인 등 사업자의 필요이상 고가 업무용 차량구입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현행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제한적 비용처리 규정을 차량의 배기량이나 가격이 일정수준 (예를 들어, 2,000cc 또는 3,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리스가액의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리스대상 승용자동차의 가액에 따라 필요경비나 손금산입가능금액의 제한을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16)

#### 6. 나가며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고가차량의 구매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인해 필요이상으로 고가차량의 구매가 증가하고, 업무용임에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세금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정부는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개선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이고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6) 배기량 및 차량가액에 대한 차등적 손금 인정에 대해 한-미 FTA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수입차에만 적용하는 규정이 아닌 모든 차량에 적용하는 규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sup>14)</sup> 즉, 보험가입 여부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사용배제 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직원인 운전기 사가 경영진 자녀의 통학에 사용할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없고, 보험가입 후 경영진이 업무용 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도 있다.

<sup>15)</sup> 참고로 업무용 차량의 업무무관 사용분을 산 정하는 방법은 해외 주요국마다 차이가 있으나, 크게 "업무무관 사용분을 추계하는 방법"과 "실제발생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이며, 납 세협력을 위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구체적